

##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9368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2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진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 6. 22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4. 12. 4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이서형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18.09.21.	260,000,000		2018.09.21.	2018.09.12.		
주택도 시보증 공사 (임차인 이서형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권 자	2018.09.21.~ 2020.09.20.	260,000,000		2018.09.21.	2018.09.12.	2024.11.27.	
<b>&lt;비고&gt;</b>										
이서형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1. 12. 9.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, 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한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  
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9368

### [물건 1]

#### 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71-4, 75-3, 75-4

늘푸른빌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로 40

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(다세대주택)

1층 16.45㎡

2층 147.40㎡

3층 147.40㎡

4층 119.70㎡

5층 68.85㎡

####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 303호

철근콘크리트구조

45.39㎡

####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71-4

49㎡

2. 동 소 75-3

149㎡

3. 동 소 75-4

130㎡

대지권의종류 : 1, 2, 3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, 3. 328분의 37.77

감정평가액

282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3.18

282,000,000

28,200,000

2회

2026.04.29

197,400,000

19,740,000

3회

2026.06.10

138,180,000

13,818,000

4회

2026.07.15

96,726,000

9,672,600